

의안번호	제860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: 김정일 · 이정범 · 유상용
김성대 · 박병천 · 박봉순
박진희 의원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,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작은학교 지원계획 수립 · 시행(안 제4조)
- 마. 작은학교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(안 제5조~안 제6조)
- 바. 작은학교 교직원 배치 및 교직원 우대(안 제7조~안 제8조)
- 사. 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· 운영(안 제9조~안 제12조)
- 아.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13조)
- 자. 「충청북도 농 · 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(부칙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첨부

다. 관계부서 협의: 행정과

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
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작은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
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작은학교
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
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
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
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3. 작은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5.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
3.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
4.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
5.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
6.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예산지원)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,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시·군에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·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(교직원 배치)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직원 우대)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, 국내외 연수기회의 우선 제공 및 업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(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)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장은 소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예산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학부모

2.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·현직 공무원
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
4.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,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작은학교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

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충청북도 농·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계법령

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4. 12. 20.] [법률 제20562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작은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지원사업), 안 제6조(예산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현재 추진 중인 작은학교 지원사업을 전제로 하며, 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아님
 - ※ 향후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변동될 수 있음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 - ※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
 - ※ 산출내역 단가는 충청북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,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기본운용계획에 따름

나. 추계 결과: 13,531,388,000원

-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: 5,064,200,000원
 - 10,400,000원 × 대상학교 수
 - *단가: 5년간 5개 세부사업 지원 총액을 기간 및 사업 수로 나눈 값
 - {(64,000천원 × 2개 사업) + (44,000천원 × 3개 사업)} ÷ 5년 ÷ 5개 사업 = 10,400천원
 - 2025년: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

2026~2029년: 1교당 10,400천원으로 추계

*대상학교 수: 2025년 87교, 2026~2029년 매년 5개교 추가,
2029년 107개 학교로 확대

※ 희망학교의 신청에 따른 선정으로 연차별로 학교 수 변동 있음

○ 작은학교지원금 지원: 8,467,188,000원

- 10,000,000원 × 대상학교 수

*2025년 현재 지원 학교 수(170교) 기준으로 5년간 추계

*2025년: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편성액 기준

2026~2029년: 1교당 10,000천원으로 추계

※ 희망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학교 수 및 지원액 변동 있음

<참고>

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

농산촌지역 작은학교(6학급 이하 초등학교, 3학급 이하 중학교) 특색사업 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 및 학생 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 5개년 간 지원(사업별로 44,000천원~64,000천원 지원) 하는 사업

작은학교지원금

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교당 10,000천원 이내로 작은학교 특색교육 지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,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2,592,188	2,656,800	2,708,800	2,760,800	2,812,800	13,531,388
농산촌 특색학교		925,000	956,800	1,008,800	1,060,800	1,112,800	5,064,200
작은학교지원금		1,667,188	1,700,000	1,700,000	1,700,000	1,700,000	8,467,188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925,000	956,800	1,008,800	1,060,800	1,112,800	5,064,200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925,000	956,800	1,008,800	1,060,800	1,112,800	5,064,200
	특별교부금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1,667,188	1,700,000	1,700,000	1,700,000	1,700,000	8,467,188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